## 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

Text **('25上 평가번호 : 30 )** 

Special

개인·법인	업종(코드)	조사유형	외형구간	조사청	
법인	운수(630102)	비정기	7,000억원대	지방청	

## Text I 조사성과(결과)

## Text 가. 조사대상 개요

Text ○ (업체개황)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거점을 통해 항만하역 및 육상·
Text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 물류기업('23년 기준 국내 00위)

Text ( ) (사업현황) 최근 대형크레인 및 담수설비, 원유 정제시설 등 플랜트 Text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중량물 해상운송을 위해 자항선을 보유·운용하고 있으며,

Text -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 물동량 증가로 인한 수혜로 '22년 창사 Text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등 외형 증가세에 있음

## Text 나. 적출성과

## Text ○ 주요 적출 내역

Special

ıl	연 번	조사항목	코드	적출요지(결정경정 사유)
	1)	퇴직급여, 퇴직급여 충당금	10602	지배지분 확보 목적의 퇴직급여 중간 정산액 손금 부인
	2	자산부채 평가	10301	무상 취득한 자산(고박장치) 계상 누락

# Text Ⅱ 조사노하우

Special

**적출**1

- ❖ 퇴직급여, 퇴직급여 충당금 (항목코드:10602)
  - 지배지분 확보 목적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액 손금 부인

### Text **1. 조사착안**

## Text 가. 착안사항 도출 과정

Text ○ 조사법인은 사주일가의 지분 보유율이 22% 수준인 상장법인으로 오너가

Text 회장 직책으로 직접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, 오너 2세대로의 안정적인
경영권 이전을 위해 보유지분 확대를 꾸준히 준비해 옴

Text - 조사법인은 사주에게 『법인세법』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고액의(27억원)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점과,

Text - 동일 시기에 사주(오너2세)가 조사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30억원의

Text 콜옵션 행사자로 단독 지정하였고 이후 동 콜옵션을 행사하여 100억원

상당의 막대한 차익을 향유하고 지배지분을 확대한 배경에 의문을 가짐

### Text 나. 사실관계

Text ○ (임원 지위) 사주는 '03년 상무직책으로 조사법인에 입사 후 '09년부터

Text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역임하는 등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임원으로

재직 중임

#### Text < 사주의 인사기록 >

**Table** 

ole	발생일시	세부내역		
	1992. 02. 01.	조사법인 수습사원 입사(기획부, 기획조정실)		
	1997. 07. 31.	면직		
	2003. 01. 01.	이사보(신규채용, 본사 임원실)		
	2005. 01. 01.	상무 승진		
	2014. 12. 18.	부회장 승진		

- Text O (퇴직급여) 조사법인은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

  Text 책임지고 운용하며,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 급여를 계산하는 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을 운영 중
- Text (퇴직급여 지급) 조사법인은 '20년 4월 사주에게 퇴직급여 중간정산 명목

  Text 으로 27억원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7억원을 원천징수·납부
- Text (전환사채 매입) 사주는 현금여력이 없던 차에 위 퇴직금을 재원으로 조사법인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여(30억원) 자기자본 없이 조사법인의 지배지분을 확대하고 평가차익을 향유

#### Text 다. 세무상 문제점

Text ○ 사주의 전환사채 콜 옵션 행사 자금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퇴직급여를

Text 중간정산·지급한 경우『법인세법』상 과다경비 등(퇴직급여)의 손금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및 콜옵션 분여이익 과세 여부

##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【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】

-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"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
- 1.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(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임원(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)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
- 3. 천재·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

## Text **2**. 조사기법

### Text 가. 적출항목 조사 방법

Text ○ (퇴직급여 중간정산)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

Text 당해 지급시점('20년 4월)을 전후하여 사주의 재산상태, 생활수준 및

건강상태와 의료기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실시

Text - (① 주택보유) 당시 사주는 서울과 부산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, 퇴직 Text 급여 중간정산 기준인 무주택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

#### Text < 사주의 주택 보유 현황 >

Table	물 건 소 재 지	취득일자		
	부산 해운대 O동 1***-1 해운대 아*** 1**-3***	2006. 10. 25.		
	서울 용산 2*-1 파*** 1**-1***	2009. 07. 10.		

Text - (② 장기요양) '20년 기준 사주 본인, 처, 부, 자녀3인의 의료비 지출액 (7백만원)을 확인한 결과 다른 연도의 지출액 대비 낮은 수준이고, 장기를 요하는 진료·요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

Text < 사주일가 의료비 지출 현황(지급명세서) >

(백만워)

Table	구 분	합 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	의료비 (부양가족 포함)	55	8	7	15	17	8

Text - (③ 천재·지변) 사주는 '20년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소재의

Text 고급빌라에 거주하였으며, 해당 지역은 치안과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부촌으로 천재·지변이 일어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

#### Text 나. 조사법인 주장의 타당성 조사 실시

Text O (조사법인 주장) 조사법인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작성된 내부 품의문을

Text 제시하며 사주의 부친 \*\*\*(창업주, 명예회장)의 장기 요양과 치료를
사유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주장

Text ( (중거조사) 조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실태 및

Text 사주의 소득 및 생활실태 검증을 통해 조사법인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음을 확인

Text - (건강보험) 사주의 부친은 '1X년 파킨슨 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 Text 되며, 동일 질병 환자 커뮤니티 등 검색을 통해 동 질병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임과 약물 치료 외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음을 확인

#### Text → 건강보험 산정특례(파킨슨병)

Text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경우, 본인부담율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로, 파킨슨 병의 경우 레보도파약물 복용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이 소요

- (소득수준) 사주의 부친 본인은 장기요양을 사유로 '19년 퇴직급여 1.2억원을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점과 본인의 연간 급여 수준(1.9억원)을 볼 때,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

#### Text 다. 과세근거 확보

- Text O (일시보관) 조사착수 당일, 조사요원 20여명을 본사에 투입, 조사법인
  Text 전 직원의 전산 파일(약 1,100만 건) 및 수동 보관 자료 확보
- Text (그 (관련자 조사) 일시보관된 전산자료 분석 결과, 전환사채 인수 및
  Text (콜옵션 부여 등 일련의 과정이 조사법인 기획실의 주도하에 은밀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기획실장(\*\*\*)에 대한 조사 실시
  - Text 기획실장은 사주의 처남으로, 조사팀과의 문답에서 **사주의 퇴직급여**Text 중간정산은 전환사채 인수 및 콜옵션 행사에 따른 경영권 확보에 목적이 있었음을 시인함

## Text **라. 조사결과** (사익편취)

- Text (업무무관가지급금) 사주에게 지급된 명목상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, 퇴직급여 및 지급 이자 등 손금부인(35억원)하고 인정이자 상여 처분(4.5억원)
- Text (부당행위계산부인) 조사법인의 사주에 대한 전환사채 **콜옵션 무상 분여** 이익(2억원)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처분 ▷ 사익편취
- Text (불복여부) 조사법인은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고, 불복 없이 세금 Text 전액을 현금 납부

Special

적출[2]

- ❖ 자산부채 평가 (항목코드:10301)
  - 무상 취득한 자산(고박장치) 계상 누락

## Text **1. 조사착안**

Text 가. 착안사항 도출 과정

Text O 조사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대형크레인 및 담수설비,
Text 원유 정제시설 등 플랜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중량물 해상운송을 위해 자항선을 보유·운용

Text ○ 조사법인의 중량물 사업부문 인터뷰 과정에서 중량물 해상운송에는

Text 대규모의 선박 적재물 고박장치(철재로 구성된 화물 고정장치)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

Text < 선박(자항선) 고박장치 예시 >

Table



Text ○ 세금계산서 및 중량물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전표 등 분석 결과, 고정

Text 설비의 설치 용역비의 지출은 확인되나, 고정설비 취득 관련 지출이
불분명한 점에 착안하여 고박장치 자산 계상 누락에 대한 조사 실시

## Text 2. 조사기법

Text 가. 적출항목 조사 방법

Text ○ (운송계약) 화주와의 운송계약 상 고박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은 통상

Text 화주가 부담하며(조사법인이 설치하고, 이를 화주에게 청구), 운송 완료
시점까지의 고박장치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는 것을 확인

- Text O (소유권포기) 운송계약 상 고박장치는 하역 후 화주의 책임으로 반드시 Text 해체하여야 하며, 화주의 입장에서는 국외 현장에서 해당 고박장치를 처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
- Text (기계사용)화물의 유형에 따라 고박장치의 형태와 배치가 달라지며,
  Text (운송 프로젝트별 고박장치 설치 도면과 자재 매입 내역을 비교한 바,
  도면 대비 자재 매입이 과소한 사실을 확인, 조사법인 소명 요구
  - Text 조사법인측은 기존 프로젝트에서 설치된 고박장치 중 화주가 소유권을 Text 포기한 고박장치를 무상 취득하여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
- Text (이 (현장확인) 조사팀의 현장확인(마산항) 결과, 재사용하는 고박장치는
  Text 항구에 별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수량, 자재의 가액, 재사용현황 등을
  장부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
- Text O (장부대조) 현장확인에서 확보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, 결산명세서

  Text (유형자산)와 대조한 바, 무상 취득한 고박장치를 자산 계상 누락한

  것으로 확인
- Text ( (자산가액산정) 해당 고박장치는 해체 후 고철의 형태로 존재하므로,
  Text (수량(중량)에 기말 기준 고철 시세를 반영한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산정

## Text 나. 과세근거 확보

- Text (자료확보)화물운송이 종료된 프로젝트로 대상으로 그릴리지 해체

  Text 외부 용역비 발생·정산자료 등을 특정하여 화주로부터 무상 취득한
  그릴리지의 수량(중량)에 대한 일부 전산자료 확보
- Text (이 (현장확인) 전산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물량에 대해서는 각 프로젝트

  Text (별 현장확인(관련자 인터뷰, 항구/항차별 프로젝트 관리자료 확인)을
  통해 무상취득한 그릴리지 특정

#### Text 다. 조사결과 (신종탈루)

- Text **(자산누락)** 화물 운송 종료 후 화주로부터 무상 취득한 고박장치 가액 Text 17억원 익금 산입(유보처분) ⇨ **신종탈루**
- Text (불복여부) 조사법인은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인정 및 불복없이 세액 전액 납부